

의안번호	제 516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352 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6
----------	-----

제출연월일 : 2016. 11. 2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6.9.1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안 2조2항)
- 위원회 위촉 기준을 개정하여 전문성 증대(안 2조2항)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
 - 위원에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를 신설 추가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및 개정하여 적법성 확보(안 4조1항)
 - 법 제9조의2에 따른 사항 심의 시 “관련업체가 구매 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신설 추가
 -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제외 사유로 추가
- 위원의 해촉 규정을 개정하여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12조)

나.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 위촉위원 연임 제한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법제명 변경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4호)
- 직제명 변경에 따라 ‘경리담당사무관’ 을 ‘계약담당사무관’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6.10.7. ~ 2016.10.27.):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으로 하고”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로서 관련분야”를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기관 및”을 “국가기관과”로,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경리담당사무관”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없는”을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내에 한하여”를 “이내에서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u>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u> 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충청북도교육비특별</u> <u>회계 본청 경리관으로 하고</u>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u> <u>촉한 자로 한다.</u></p> <p>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u>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u> <u>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u> <u>있는 자</u></p> <p>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u>자로서</u> <u>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u> <u>풍부한 자</u></p> <p>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 <u>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u> <u>체가 추천하는 자</u></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u>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u> <u>로 성별을 고려하여 ---.</u></p> <p>② ----- <u>민간위원 중에서</u> <u>호선하고 위촉위원-----</u> ----- ----- <u>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u> <u>촉한다.</u></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u>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u> <u>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u> <u>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u> <u>중인 사람</u></p> <p>2. ----- <u>사람으</u> <u>로서 관련 분야-----</u> -----<u>사람</u></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 <u>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u> <u>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u> <u>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u> <u>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u></p>

현행	개정안
<p>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p> <p>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p> <p><신설></p> <p>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경리담당사무관</u>으로 한다.</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부한 사람</u></p> <p>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삭제></p> <p>6. <u>국가기관과</u>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 <u>풍부한 사람</u></p> <p>③ <u>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u></p> <p>④ ----- ----- <u>계약담당사무관</u>-----.</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 <u>사무</u>----- ----- <u>없을</u> ----- -----.</p>

현행	개정안
<p>② <u>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u>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u>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p>② <u>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기능) ① ----- ----- ----- ----- ----- ----- <u>각 호</u> ----- ----- . -- <u>제5호</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u>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u>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u>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u>법</u>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p> <p>6.·7.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u>조달사업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6조(소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u>해당분야</u>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u>5인</u>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u>때에는</u> 심의 또는 자문요청</p>	<p>6.·7.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u>----- -----.</p> <p>제6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해당 분야</u>----- ----- -- <u>5명</u>-----.</p> <p>④ <u>제1항에 따른</u> ----- ----- ----- -----.</p> <p>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 <u>따라</u> ----- ----- <u>경우에는</u> -----</p>

현행	개정안
<p>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당해</u> 심의기간을 7일 <u>이내</u>에 <u>한하여</u>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p>	<p>----- ----- ----- ----- <u>해당</u> -----<u>이내</u> <u>에서만</u>----- -----</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u>따른</u> ----- -----.</p>
<p>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u>때에는</u>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심의결과 반영) ----- ----- <u>따라</u> ----- ----- <u>경우에는</u> ----- ----- ----- ----- -----.</p>
<p>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u>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u>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현행	개정안
<p>2. <u>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p> <p>3. <u>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p>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4. <u>제12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p>
<p><u><신설></u></p>	<p><u>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u></p>

현행	개정안
	<p>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p> <p>2. <u>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u></p> <p>3.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u></p> <p>5. <u>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u></p> <p>② <u>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6.11.30.] 제32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⑥ 삭제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